
발전소 운전정비규정 대비표

2022. 12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3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“운전근무자”란 발전소 운전에 관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교대(시차)근무를 하는 자로서 「발전소 운전원 자격관리 요령」에서 정하는 운전원과 운전감독자를 말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“운전근무자”란 발전소 운전에 관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교대(시차)근무를 하는 자로서 「발전기술원 자격관리 기준」에서 정하는 발전기술원, 선임대리와 운전감독자를 말한다.</p>	적용사규 및 명칭 현 행 화
<p>② “운전책임자”란 운전근무자 중 운전감독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발전팀장을 말한다.</p>	<p>② “운전책임자”란 운전근무자 중 운전감독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발전파트장을 말한다.</p>	
<p>제6조(발전소 운전) 발전소의 운전은 운전지침서 (Operation Manual), 운전조작세부설명서, 운전절차서, 안전작업수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</p>	<p>제6조(발전소 운전) 발전소의 운전은 운전지침서 (Operation Manual), 운전조작세부설명서, 운전절차서, 안전작업허가운영세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</p>	사규명칭 현 행 화
<p>제7조(임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임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0조 ①항 1~5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조작의 경우 2인 1조 시행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(2022. 12 신설)</p>	인적실수 예방 및 안전작업수칙 준수 의무 명시 (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준용 및 감사실 처분 요구사항 반영)
<p>제20조(고장의 보고)</p> <p>② 제1항에 열거된 고장은 발생 후 10일 이내에 「발전소 발전정지 관리기준」에서 정한 요령에 따라 본사 관련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고장의 보고)</p> <p>② 제1항에 열거된 고장은 발생 후 10일 이내에 「발전설비고장관리기준」에서 정한 요령에 따라 본사 관련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적용사규 현 행 화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21조 (고장의 예방) 사업소장은 취약설비에 대한 예방점검과 설비의 개선 등을 통해 고장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20조 ①항에 열거된 고장발생시 「발전소 발전정지 관리기준」에 의거 고장조사를 시행하고 유사 고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21조 (고장의 예방) 사업소장은 취약설비에 대한 예방점검과 설비의 개선 등을 통해 고장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20조 ①항에 열거된 고장발생시 「발전설비고장 관리기준」에 의거 고장조사를 시행하고 유사 고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사규명칭 현 행 화</p>
<p>제25조(입찰변경)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시 운전책임자는 주간에는 본사 전력거래팀으로, ~ (중략)</p>	<p>제25조(입찰변경)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시 운전책임자는 주간에는 본사 전력거래부로, ~ (중략)</p>	<p>부서명칭 현 행 화</p>
<p>제30조(계획예방정비) ② 계획예방정비 공사는 ~ (중략) ~ 세부사항은 「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관리지침」에서 따로 정한다.</p>	<p>제30조(계획예방정비) ② 계획예방정비 공사는 ~ (중략) ~ 세부사항은 「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관리기준」에서 따로 정한다.</p>	<p>사규명칭 현 행 화</p>
<p>제32조(설비 변경) ① ~ (생략) ~ ② ~ (생략) ~ ③ ~ (생략) ~</p>	<p>제32조(설비 변경) ① ~ (생략) ~ ② ~ (생략) ~ ③ ~ (생략) ~ ④ 4차 산업기술과 관련된 설비 개조 또는 개선사항은 「발전설비 4차산업 기술도입 운영세칙」을 따른다. (2022. 12 신설)</p>	<p>세칙 제정시 법무심사 결과 반영('20.8) (상위 규정에 위임 조항 명시)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33조(안전작업수칙의 준수) ① 정비작업자는 정비작업 수행시 반드시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33조(안전작업허가운영세칙의 준수) ① 정비작업자는 정비작업 수행시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적용사규 현 행 화
<p>제33조(안전작업수칙의 준수) ② 정비작업책임자는 ~ (중략) ~ 그 세부사항은 「안전작업 수칙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.</p>	<p>② 정비작업책임자는 ~ (중략) ~ 그 세부사항은 「안전작업허가운영세칙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.</p>	적용사규 현 행 화
<p>제33조(안전작업수칙의 준수) ①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33조(안전작업수칙의 준수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20조 ①항 1~5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의 경우 2인 1조 시행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(2022. 12 신설)</p>	인적실수 예방 및 안전작업수칙 준수 의무 명시 (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준용 및 감사실 처분 요구사항 반영)
<p>제35조(꼬리표의 발행) 운전책임자는 발전설비의 안정운전과 정비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시마다 꼬리표를 발행하여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「안전작업수칙」의 “제6장 휴전 및 작업승인과 접지”에 따른다.</p>	<p>제35조(꼬리표의 발행) 운전책임자는 발전설비의 안정운전과 정비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시마다 꼬리표를 발행하여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「안전작업허가운영세칙」의 “제3장 계통차단”에 따른다.</p>	적용사규 현 행 화
<p>제36조(설비의 보존) 사업소장은 ~ (중략) ~ 그 세부사항은 「발전정지시 설비보존지침」에서 따로 정한다.</p>	<p>제36조(설비의 보존) 사업소장은 ~ (중략) ~ 그 세부사항은 「발전소 정지시 설비보존기준」에서 따로 정한다.</p>	사규명칭 현 행 화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38조(정기검사)</p> <p>③ 상기 ②항의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「발전소 정기검사지침」에서 따로 정한다.</p>	<p>제38조(정기검사)</p> <p>③ 상기 ②항의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「발전소 정기검사기준」에서 따로 정한다.</p>	<p>사규명칭 현 행 화</p>
<p>제40조(양수발전소의 특례)</p> <p>① 양수발전소의 댐 및 부속설비와 수로설비의 점검.정비는 "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"의 규정 및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.</p> <p>② 저수지의 관리.점검에 관한 사항은 "고정자산관리규정"에 따라 시행한다.</p> <p>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소별로 내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</p>	<p>제40조 (2022. 12 삭제)</p>	<p>특 례 적용설비 미 보 유</p>